135. 차량엔진 조립공에게 발생한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건염 성별 나이 42세 직종 수송용기기계기구 제조업 업무관련성 판단불가

- 1. 개요: 근로자 권OO은 1988.2.22 OO자동차에 입사하여 차량 엔진 조립 업무에 18년여 근무하던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괄절 회전근개건염으로 진단받었다.
- 2. 작업내용 및 환경: 권OO은 1988년 2월 2일에 OO자동차(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엔진4부 1톤조립과 내부조립반 헤드조립조에서 근무하고 있다. 작업 내용은 RR OIL SEAL 케이스장착, FRT 로워 케이스 장착, OIL SCREEN 장착, 워터펌프 장착, 플라이 휠 장착, OIL PAN 장착, 디스크 클러치 장착 등 10개의 공정을 월 단위로 순환하며 반복적인 작업이다. 각 공정에서 엔진에 부착하기 위한 부품은 작업자가 직접 자재팔레트(200-480kg)를 밀고 당겨서 작업위치로 이동시켜 작업한다. 작업은 엔진블럭에 필요한 부품을 밀착 또는 홀에 정확히 맞추고 에어 임펙트(1-2kg)로 볼트, 너트 조임으로 마무리한다. 작업자세는 서서 양손을 이용하여 들기, 밀기, 당기기, 돌리기, 손바닥으로 치기, 특히 실린더헤드소재(18kg)를 사양에 따라 손으로 들어올려 옮기며 작업한다. 면담회의에서 피재근로자가 작업했던 공정이 회사 자체계획에 의해 2007년 12월 말경에 폐기되었음을 알았고 해당 공정에 있었던 각종 설비는 이미 철거되어 없어진 상태였다. 동 사업장 및 다른 지역 공장에도 유사 공정이 없다고 했다.
- 3. 의학적 소견: 만성질환력이나, 교통사고, 스포츠 손상 과거력도 없었다. 근로자 권OO은 2006.2.2 플라이휠이 적재된 팔레트를 이동 중 2개의 팔레트가 동시에 이동되어 우측 손으로 지탱하는 중 우측 어깨와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06.12.13 OO병원에서 정 밀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괄절 회전근개건염으로 진단받았다.
- **4. 결론:**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권OO은,
 - ① 2006년 2월 플라이 휠이 적재된 팔레트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와 목의 통증이 발현되었다고 주장하고, 동년 12월에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을 진단받았지만
 - ② 사고 이전과 그 이후의 어깨의 통증 치료력으로 볼 때 사고에 의한 급성 파열이기보다 퇴행성의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 ③ 해당 공정이 제거되었고 동 사업장 및 다른 지역 공장에도 유사 공정이 없어 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 권OO의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건염은 직업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근로자 권OO의 입사 후 수행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판단할 수 없었다.